'23년 6월 제작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16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 현황

- **건설업** …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농축산업**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 **어업** …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 **서비스업** …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벤꾸리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희망!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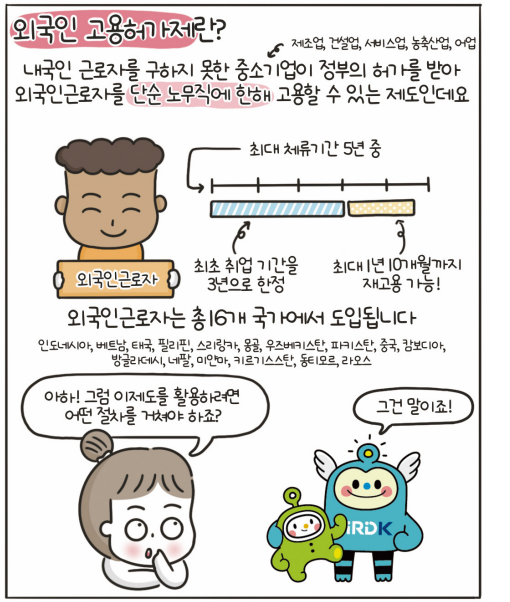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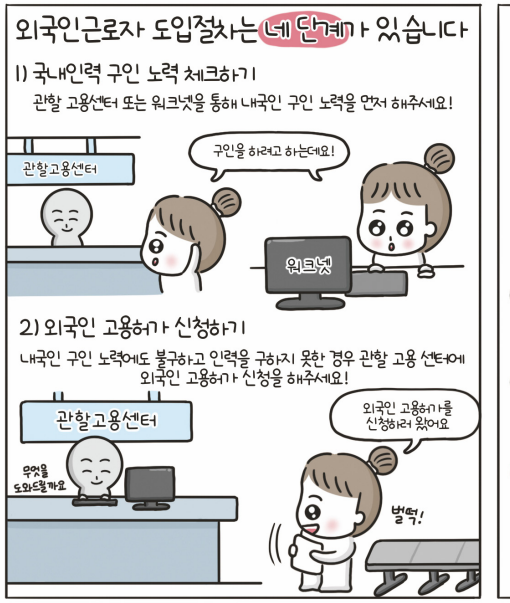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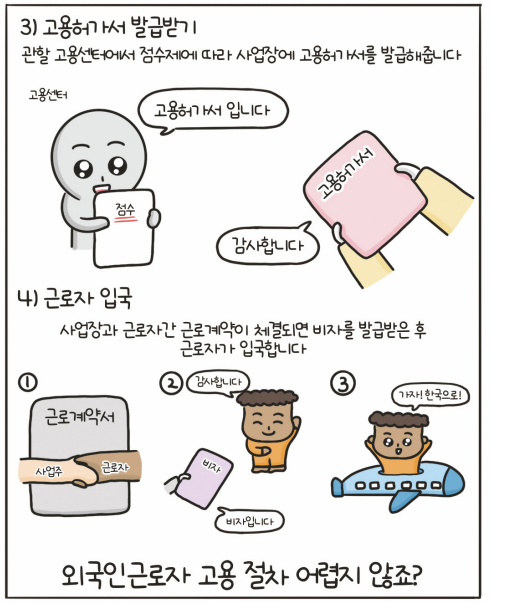

그런데 말이죠_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몇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질

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①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②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① 상해보험

② 귀국비용보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군요! 그런데 이 보험들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거죠?

그것은 말입니다_!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 오세요!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보험은 삼성화재로!

삼성화재로 오세요!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귀국비용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세요!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2) 산업재해보험

안전

안전

제일

3) 고용보험

4) 국민연금

4대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

!!!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가입의무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만약 사업주가 농, 어가 개인사업주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하! 농, 어가의 경우에는 이 보험들에 가입해주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확약서를 제출해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란?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 관리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보충성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투명성	● 외국인력 도입 · 알선 등의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 * 공공부문 : 지방관서(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방관서(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채용, 취업 불가
시장수요 존중	● 인력수급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업종 결정 ●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 · 도입 지향
차별금지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 냉동 창고업(내륙), 서적 ·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외국인근로자 선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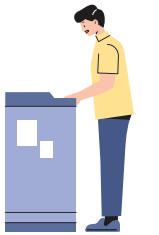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력 선발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역량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복합선발제

〈1차 평가〉 한국어능력시험

1차 평가 합격자 선발
: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

필수	해당자만
〈2차평가〉 기능시험	+ 〈2차평가〉 직무능력평가(가점 부여) 근무경력, 직업훈련 또는 학력, 국가자격

▼

◀ 1차평가(한국어능력시험)과 2차평가(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

1차 평가 한국어능력시험

● 외국인구직자 선발을 위하여 한국어 사용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 정도 등을 평가

● **문제구성**

평가영역	문항 수	배점	시간	비고
계	40문항	100점	50분	객관식 4지 선다형
읽기	20문항	50점	25분	
듣기	20문항	50점	25분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 하한점수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상대평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선정

*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최소 합격점수 상향('21년 55점)

● **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②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③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 또는 출국된 경력이 없는 자
④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는 자
⑤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6년

2차 평가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면접', '기초기능', '직무능력' 4개 영역을 평가**

체력 (전 업종 공통)	악력, 배근력, 체중, 신장, 색각검사 (신체 특이사항)		기초기능 (농축산업)	공통	핀 꽂기, 일륜차 운전
면접 (전 업종 공통)	자기소개 및 태도(동영상 촬영), 한국어 기초대화 및 행동지시, 업종별 명칭 맞추기, 기초직업능력			선택	모형 맞추기, 작업물 운반
기초기능 (제조업)	공통	핀 꽂기, 링걸기	기초기능 (건설업)	공통	핀 꽂기
				선택	패널제작, 철근조립 · 결속
	선택	볼트 · 너트 조립, 계량 · 계측, 이음 접합	기초기능 (어업)	공통	핀꽂기, 중량물 적재
				선택	일륜차 운전, 로프정리 매듭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배점 및 구성현황

업종	총점	한국어 능력시험 (1차 평가)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2차 평가)							
			총점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가점부여)			
				체력	면접	기초기능	계	근무 경력	직업훈련 또는 학력	국가 자격
제조업	200점	100점	100점	30점	30점	40점	5점	3점	1점	1점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점	90점	110점	30점	30점	50점	5점	3점	1점	1점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방식**

외국인근로자의 신규인력 배정 시 장기간 사전대기 하는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와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항목으로 함으로써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 점수제 방식으로 우선 배정

● 과정별 흐름도





● 점수제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신규 점수제 배정에 대한 계획 확인(www.eps.go.kr)

'23년 2회차('23.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점수제 기준

구분	항목
기본항목 (4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점수 높음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접수 마감 익월부터 6개월간)가 많을수록 점수 높음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 점수 높음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 점수 높음
가점항목 (7개)	농축산업 ·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 우수 기숙사 설치 · 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등 7개 항목
감점항목 (9개)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등 9개 항목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추첨

사업장 변경자 채용 시에는 상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점수제 적용을 받지 않음

* 신규 외국인력도입과 사업장변경자 고용의 차이는 21p 참조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별 신청방법



<table>
<tr><th>절차</th><th>방법</th></tr>
<tr><td>내국인 구인노력
사업주 → 고용노동부</td><td>●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내국인 구인 신청</td></tr>
<tr><td>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주 → 고용노동부</td><td>●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배정공고에 따른 신청시기 내
•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기숙사시설표, 발급 요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td></tr>
<tr><td>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 사업주</td><td>● 점수제에 따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 가능인원의 3배수로 추천
● 지정된 날짜, 시간에 맞춰 지방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고용허가서 발급</td></tr>
<tr><td>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td><td>
<table>
<tr><th></th><th>구분</th><th>업무내용</th><th>수수료</th></tr>
<tr><td rowspan="3">필수</td><td rowspan="2">도입위탁</td><td>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 및 특별한국어 재입국자)</td><td>60,000원</td></tr>
<tr><td>재입국특례자 재입국지원
(구. 성실 재입국자)</td><td>119,000원</td></tr>
<tr><td>취업교육</td><td>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td><td>제조업, 서비스업: 234,000원
농축산업: 260,000원
어업: 258,000원
건설업: 280,000원</td></tr>
</table>
※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수료 납부
</td></tr>
</table>

<table>
<tr><th>절차</th><th>방법</th></tr>
<tr><td>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td><td>
<table>
<tr><th></th><th>구분</th><th>업무내용</th><th colspan="3">수수료</th></tr>
<tr><td rowspan="5">선택</td><td rowspan="3">각종 신청대행</td><td rowspan="3">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수령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 시 산재, 사망신고 각종 정보 제공 등</td><td rowspan="2">신규 및 재입국자</td><td>43,000원 (입국 전)</td><td rowspan="2">86,000원</td></tr>
<tr><td>43,000원 (3년)(입국 후)</td></tr>
<tr><td>재고용자</td><td colspan="2">28,000원(2년 미만)</td></tr>
<tr><td rowspan="2">편의제공</td><td rowspan="2">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등</td><td>사업장 변경자</td><td colspan="2">1,200원 x 잔여체류기간(월)</td></tr>
<tr><td>신규 및 재입국자</td><td colspan="2">76,000원(3년)</td></tr>
<tr><td></td><td></td><td>재고용자</td><td colspan="2">50,000원(2년 미만)</td></tr>
<tr><td></td><td></td><td>사업장 변경자</td><td colspan="2">2,100원 x 잔여체류기간(월)</td></tr>
</table>
※ 선택 항목은 아래 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사업주가 직접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기관 연락처]
<table>
<tr><th>대행기관</th><th>업종</th><th>연락처</th></tr>
<tr><td>중소기업중앙회</td><td>제조업, 서비스업(냉장 · 냉동창고업 제외)</td><td>☎ 1666-5916</td></tr>
<tr><td>농협중앙회</td><td>농축산업</td><td>☎ 02-2080-5598</td></tr>
<tr><td>수협중앙회</td><td>어업, 냉장 · 냉동창고업</td><td>☎ 02-2240-3157
☎ 02-458-9191</td></tr>
<tr><td>대한건설협회</td><td>건설업</td><td>☎ 02-3485-8453</td></tr>
</table>
</td></tr>
<tr><td>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td><td>●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자의 출신국 송출기관에 근로계약서 전송, 근로계약 체결 확인</td></tr>
<tr><td>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발급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 ↔ 법무부</td><td>● 대행없이 직접수행 시 사업주가, 대행시 대행기관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비자포털(www.visa.go.kr)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법무부에서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td></tr>
<tr><td>비자신청 및 발급
외국인근로자 ↔ 주 송출국 대한민국 대사관</td><td>●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관(대사관)으로 취업사증(비자, E-9)을 신청
●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심사 후 취업사증(비자, E-9) 발급</td></tr>
<tr><td>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취업교육기관 ↔ 외국인근로자</td><td>● 근로자 입국 7~10일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안내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종료일에 근로자 인도(취업교육기관에서 인도 일시 등 안내)</td></tr>
</table>

외국인근로자 보험제도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근거	외고법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 질병에 대비
가입대상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각 호중 하나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벌칙규정	미가입 시 500만원이하 벌금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 ·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0~102.4%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0~107.6%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 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해: 1천5백만원
담당기관	삼성화재 (☎ 1600-0266)	삼성화재 (☎ 1600-0266)	서울보증보험 (☎ 02-777-6689)	삼성화재 (☎ 1600-0266)

※ 근로계약체결 효력발생일 : 40p 자주하는 질문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또는 연체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02-777-6689)**, **출국만기보험**은 **삼성화재(1600-0266)**로 연락하시어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사와의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가입의사와 함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사업장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서울보증보험(mill0121@sgic.co.kr), 삼성화재(neopower.lim@samsung.com)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주시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23년 기준)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가입 강제여부	**당연적용** * '19.7.16.부터 당연적용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도 당연 지역가입	**당연적용**	**당연적용** *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신청(임의가입)	**당연적용** (상호주의)
당연적용 적용 제외	–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23.3.29.기준)
산출내역	표준보수월액 × 7.09%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	표준보수월액 × 요율	표준보수월액 × 9.0%
보험료 부담자	(직장가입자) 근로자 50% (3.545%) 사업주 50% (3.545%) (지역가입자) 근로자 100%	사업주 100%	사업주 전액부담 0.25~0.85% (규모기준 차등)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0.9%	근로자 50%(4.5%) 사업주 50%(4.5%)
보험금 지급 및 혜택	외국인근로자 질병발생 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출국 시 반환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지방관서(고용센터) (☎ 1350)	국민연금공단 (☎ 1355)

※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고객센터로 문의 요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 가능
- 제외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2023년 2월 3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법」 및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재고용 / 재입국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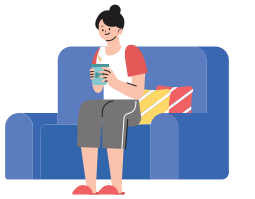

재고용 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 까지**
- **신청대상**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적용조건 충족 시 **출국 후 1개월 후에 종전 사업장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대상자와 고용사업장 **적용조건**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

- 자율합의 계약해지 등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는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하였으나, 동일 업종 내에서 이동한 경우로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간 근속한 경우(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휴업, 폐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22p 참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 1년 미만의 경우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타당하다는 인정 시 가능

② E-9(비전문취업) 또는 E-10(선원취업)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미만일 것

③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23.5.15.부터) 일 것

④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신청대상**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 **신청기간**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하여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국어 시험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단, 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귀국한 자(단, '10.1.1. 이후 출국자로만 한정)
  - E-9(비전문취업) 또는 E-10(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6년 미만)

- 특별한국어 시험 합격자 **지정알선**
  특별한국어 시험 합격자가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최종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응시한 자는 **최종 사업장으로 지정알선**이 가능합니다.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근무 사업장에 FAX와 SMS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실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지방관서(고용센터)	근로자의 최종 근무 사업장에 FAX와 SMS 등을 활용하여 지정알선 관련 사항 안내
사업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내국인 구인노력 후 해당 근로자 지정, 고용허가서 발급

재고용 및 재입국 제도 비교

구분	재고용	재입국특례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적용대상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고용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내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
대상 사업장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23.5.15.부터)	제한없음
한국어시험	–	면제	특별한국어시험 합격 필수
취업교육	–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제한기간	–	출국일로부터 1개월 ('21.10.14. 부터)	출국일로부터 6개월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필수	반드시 출국 전 근무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	출국 전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가능
사업주의 사전신청	필요	필요	필요
신청기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자 지정알선 희망 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필요	불필요	필요

사업장 변경 제도



사업장 변경 제도

외국인근로자(E-9)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최대 3회,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업종 이외에는 업종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단, **제조업 입국자**의 경우 제조업 외에 농축산업, 어업 및 건설업으로도 업종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업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사업장 변경 사유 발생 시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업으로 근로중인 근로자가 질병 등의 진단으로 향후 어업 업종에 종사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서(진단서)가 있는 경우 농축산업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병 및 외부인자(환경 요인) 등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변경 횟수 포함〉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기숙사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p22 참조) 〈변경 횟수 미포함〉

③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 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횟수 포함〉

-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희망 시 사업주는 지방관서(고용센터)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근로자 고용과 사업장변경자 고용 비교

<신규 외국인력도입>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구직자 알선 (신규도입 인력풀)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자변경자 고용>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구직자 알선 (사업장변경자 인력풀) → 면접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

구분	신규 고용	사업장변경자 고용
신청시기	신청시기 있음	상시 채용 가능
점수제	적용	미적용
수수료	있음	없음
특징	고용허가서 발급 → 도입위탁 신청	고용허가서 신청 → 알선요청
	취업교육비 · 도입위탁 등 고용수수료 3일 이내 입금	알선 유효기간: 3일 (초일 · 관공서 휴일 제외)
	사업주 직접수행, 대행기관 중 선택	근무 전 출입국 근무처변경 허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휴업, 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

①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 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4개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한 경우

③ 경영상의 이유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등

④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⑤ 농한기 및 금어기 등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근로자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2. 고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① 사업주의 **고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고용제한이 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③ **근로계약~취업교육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고용제한이 된 경우

3.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
- 월 임금의 30%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또는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
- 월 임금의 10%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또는 4회 이상) 임금체불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② 채용 시 제시하였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이상 감축**(1년 내 2개월 이상)

③ 채용 시 제시하였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대를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변경**(1년 내 1개월 이상)

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 발생 1개월 경과 시점까지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① 사업주,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성폭행**으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주 또는 사업장 등 사업주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주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⑤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⑥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시정요구에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위반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

①「**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고용사업장 **체류지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각종 체류지원 행정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대상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사업장 적응력, 근무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지도
	근로계약 준수 여부, 기숙사 등 근무 환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 여부 확인 및 개선 지도
지원방법	사업장 방문 및 전화

● 농축산 · 어업 사업장 특화 서비스

대상	농축산 · 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지원내용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종합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관서 (고용센터)**	**출입국 외국인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 · 수협 · 중소기업 중앙회**	**전용보험사**	**경찰서**	**결핵협회, 협약병원**
제공서비스	통역상담, 애로해소 지원	근로기준법 안내 등	출입국 관리법 안내 등	산업재해 예방교육	업종별 전문지식 안내 등	전용보험 안내 등	기초 법 질서 안내 등	무료 진료 등

●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 직업훈련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 · 훈련
● **대상**: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 **훈련직종** ① 중장비운전(지게차, 굴삭기운전, 특수) ② 자동차정비 ③ 용접(전기, CO_2, 특수) ④ 전기 · 전자 ⑤ 기계절삭가공 (※ 훈련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훈련시간**: 1일 4~8시간(총 48시간 이내) ● **참여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전국 훈련기관 **※ 훈련기관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단, 일부 지부/지사에서만 사업 수행)	● **대상**: 3년 이상 재고용 및 재입국특례, 특별 재입국 외국인근로자(E-9) ● **교육내용**: 본국 귀국 후 취 · 창업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 ① 한국어 자격취득과정 ② 취 · 창업 직업훈련과정 ● **훈련시간**: 1일 3~8시간(총 60시간 이내) ● **참여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전국 훈련기관 **※ 훈련기관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단, 일부 지부/지사에서만 사업 수행)

농어촌 외국인고용사업장 **밀착지원**

EPS 기업지원단 현장매니저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등을 ① 몰라서 못하는 상황, ② 궁금해하는 상황, ③ 하고 싶다고 요청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속기관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문의 : 1577-0071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예정 또는 고용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령 개정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0.14.시행)으로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8조, 제32조,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시행규칙 제11조의2

의무교육대상

'21.10.14 이후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사업주교육을 수료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 시 점수제(2점) 가점 반영

교육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교육내용

① 고용허가제의 이해, ②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③ 출입국관리업무, ④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⑤ 외국인근로자 보건위생관리, 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교육

교육신청

집체교육: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E-러닝: EPS홈페이지(www.eps.go.kr) 및 EPS어플(외국인고용관리) 접속 후 사업주교육 온라인 신청

학습시 유의사항

E-러닝 수료기준: 학습기간(수강신청 월) 동안 진도 100% 이상 및 시험 60점 이상 모두 충족

외국인근로자와의 **애로사항 해소**

방법	연락처
① **통역 및 중재 지원 신청**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문의처)** 1577-0071 ② **외국인고용관련 문의 및 3자 통화 신청** **(기관)** 외국인력상담센터 **(문의처)** 1577-0071 ③ **관련 문의 및 상담** **(기관)** 외국인노동자(거점)지원센터 **(문의처)** 별도 연락처 참고	국가별 통역 서비스 이용방법(3자 통화가능) **1577-0071 + 국가번호 + ＊** (예시) 중국어 2 + ＊ / 영어 5 + ＊ 1 한국어, 2 중국어, 3 베트남, 4 필리핀, 5 영어권, 6 태국 7 인도네시아, 8 스리랑카, 9 몽골, 10 우즈베키스탄, 11 캄보디아, 12 방글라데시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미얀마, 16 키르기즈스탄, 17 동티모르, 18 라오스

센터명	주소	연락처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	02-6900-8000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94	031-838-9111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층	055-338-2727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055-253-5270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032-431-4545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진광타워 8층	053-654-9700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21 스카이빌딩	041-411-7000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82, 2층	062-946-1199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	055-912-0255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귀국준비



단계	구분	해당기관	내용
1	**출국외국인근로자 대체인력 신청 (희망 사업장에 한해)**	관할지방관서 (고용센터) (☎1350)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 6개월 이전부터 신청가능 ● **제출서류**: 출국예정신고서, 고용허가신청서
2	**급여 및 퇴직금 정산**	–	●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금과의 차액만 지급 ● 퇴직금 모의 계산(www.eps.or.kr 또는 외국인고용관리 앱)
3	**근로자와 출국일자 협의 (항공권 예매)**	–	● 외국인근로자와 출국예정일자 협의 후 항공권 예매
4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신고**	관할지방관서 (고용센터) (☎1350)	● **신고기간**: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 대체인력을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가능 ● **제출서류**: 출국예정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고방법**: 방문, FAX, 온라인(www.eps.or.kr)
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금 신청**	삼성화재 (☎1600–0266)	● **신청자격** **(출국만기보험)**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 **신청기간**: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최소 7일 전까지 ● **신청방법**: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FAX) ● **보험금 수령** **(출국만기보험)** 출국 당일 공항수령 또는 출국 후 계좌 수령 **(귀국비용보험)** 출국 당일 공항수령 또는 출국 전/후 계좌 수령
6	**4대보험 상실신고**	–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1355)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방관서(고용센터)(☎1350)
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공단 (☎1355)	● **신청자격**: 국민연금 적용국가 외국인근로자 ※ 적용제외국가: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23. 3. 29. 기준) ● **신청기간**: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위해 다양한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 3개월 전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 2개월 전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 1개월 전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 2주전
내용	출국준비 및 재고용 재입국제도 안내(우편)	귀국 컨설팅(방문 또는 전화) ➡ 취업기간 만료일 안내, 출국예정신고 등 출국 준비 안내 등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귀국 모니터링 (전화)

프로그램		귀국지원 서비스 내용
귀국 전	송출국 연계 귀국설명회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귀환성공사례 소개, 귀국 후 애로사항 극복방법 등을 컨설팅**(연중 상시)**
	경력증명서 발급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귀국 후 한국기업 및 다국적기업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근무 경력 증명서를 발급 ● **본인**: ①인터넷 회원가입 후 발급(www.eps.go.kr) 또는 ②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본국 기업 취업 지원	해외진출 한국기업 취업알선	모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온라인 취업알선사이트「리턴잡」(https://eps.hrdkorea.or.kr/e9)을 통한 취업알선 ● **취업희망자**: ①리턴잡(https://eps.hrdkorea.or.kr/e9)홈페이지에 개인회원 가입 → 구직표 등록 또는 ②구직표 작성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현지 EPS센터 송부 ※ 리턴잡–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귀국자 네트워크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사무소 EPS센터를 통한 귀국자 간담회 참석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기업 취업 등 본국 재정착 정보 파악 ● **신청**: ①리턴잡(https://eps.hrdkorea.or.kr/e9)홈페이지에 개인회원 가입 → 귀국자 네트워크 신청 또는 ②귀국자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 작성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EPS센터 송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3항**에 의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으로 국내에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 불법체류 불이익 안내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외고법 제20조)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 입국규제(출입국관리법 제11조)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국가**: 도입쿼터 축소 또는 중단

외국인근로자 **체류 단계별**
행정신고 절차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외국인고용 (신규 입국 또는 사업장 변경자)	외국인	외국인 등록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약검사확인서 등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방문, FAX, 온라인]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법인 인감 또는 대표자 사용 인감 날인)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 가입	삼성화재 (1600-0266) [방문, FAX, 온라인]	보험약정서(자동이체신청서 포함),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국만기약정리스트 등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자	귀국비용보험 가입		보험약정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해보험 가입		보험약정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공통		통합홈페이지 (www.4insure.or.kr) [방문, FAX, 온라인]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업장적용신고서 등 [근로계약 후 14일 이내(등록증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업재해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업장적용신고서 등 [근로계약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등록증 발급 후)]
		고용보험 가입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공단(1355)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사업장 정보변경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 사업주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 (고용승계, 사업장 정보) • 사업주 변경 없이 근무장소 변경 (전출, 전근, 사업장 이사, 지사간 이동 등) **※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출입국 신고 일원화**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FAX, 온라인]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사유 별 기타 필요서류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주 직접 신고 시〉**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유별 입증서류 등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합홈페이지 (www.4insure.or.kr) [방문, FAX, 온라인]	보험관계성립/변경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1355)	
		출국만기보험 계좌 변경	삼성화재 (1600-0266) [방문, FAX, 온라인]	출국만기보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서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사업장변경	**사업장 변경(구직) 전**			
	사업주	고용변동신고 **(근로계약 중도해지)** **※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출입국 신고 일원화**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FAX, 온라인]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해고통지서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주 직접 신고 시〉**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유별 입증서류 등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로자	사업장변경, 구직등록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사업장 변경신청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근로계약 중도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구직기간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가연장 (3개월) 신고 · 허가) • 구직신청자 특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온라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자진출국 각서, 구직등록필증(지방관서(고용센터)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사업장변경신청일(구직신청일)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 연장허가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여권, 병원 진단서 등 증명자료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지방관서(고용센터) 발급), 병원 진단서 등 증명자료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업장 변경(구직) 후			
	사업주	• 사업장변경자 채용 희망 시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고용허가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온라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등 [고용허가서 계약기간 전 까지]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거주지 변경	근로자	구직기간 중 거주지 이동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또는 구 · 시청 [방문, 온라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연장	사업주	고용허가기간 연장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온라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온라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재고용 (1년 10개월)	사업주	취업활동기간(3년) 연장 • 재고용허가 신청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온라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등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온라인]	통합신청서(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지방관서(고용센터)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공통	출국만기보험 연장	삼성화재 (1600–0266) [방문, FAX, 온라인]	기존 보험가입기간 연장조치
		귀국비용보험 연장		
		상해보험 가입		연장기간 동안 신규 가입
		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방문, FAX, 온라인]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고용변동 [사망]	사업주	고용변동신고**(사망)** ※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출입국 신고 일원화**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FAX, 온라인]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주 직접 신고 시〉**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유별 입증서류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통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방문, FAX, 온라인]	유족보상 · 장의비 청구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청구	국민연금공단 (1355) [방문, FAX, 온라인]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고용허가제 전용 보험청구(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보험)	삼성화재 (1600–0266) [방문, FAX, 온라인]	보험금신청서, 위임장, 유족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입증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고용변동 [질병/부상]	사업주	고용변동신고**(기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출입국 신고 일원화**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FAX, 온라인]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 재해 · 질병 진단서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주 직접 신고 시〉**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유별 입증서류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로자	**(산재보험)** 휴업(상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방문, FAX, 온라인]	요양급여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 기타 필요 서류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고용변동 [사업장 이탈]	사업주	고용변동신고**(이탈)** ※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출입국 신고 일원화**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FAX, 온라인]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 업무복귀 통지서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주 직접 신고 시〉**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유별 입증서류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통	출국만기보험금 청구	삼성화재 (1600–0266) [방문, FAX, 온라인]	보험금 신청서, 기타 입증서류 등(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시 사업주에게 지급)
고용변동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업주	고용변동신고**(근로계약 중도 해지)** ※ **지방관서(고용센터)와 출입국 신고 일원화**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45) [방문, FAX, 온라인]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서, 사업장 변경 사유확인서(사업주용), 해고 통지서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주 직접 신고 시〉**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유별 입증서류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4대보험 상실신고	통합홈페이지 (www.4insure.or.kr) [방문, FAX, 온라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등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1355)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임금체불	근로자	입금지급 독촉	–	지불각서, 최고장 등
		고용노동부 진정 · 고소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FAX,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등
		임금체불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방문, 전화, FAX, 온라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지방관서(고용센터) 발급), 보험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
	공통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방문, 전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지방관서(고용센터) 발급) 등 기타 필요서류
만기출국	근로자	출국예정신고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전화, FAX, 온라인]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항공권 사본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단, 대체인력 신청 시 6개월 전부터 가능)
		출국만기보험 청구	삼성화재 (1600–0266) [방문, FAX, 온라인]	보험금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등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귀국비용보험 청구		보험금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출국예정사실확인서(지방관서(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등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방문, 전화, FAX, 온라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등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근로자 출국	출국심사대 [방문]	외국인등록증 반납 (특별한국어시험 응시 경우 여권 '완전출국' 날인 필요)

구분	주체	신고 · 신청내용	신고 · 신청처 [방법]	신고 · 신청서류 [신청기한]
만기출국	사업주	대체인력 신청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신고서, 고용허가 신청서, 비행기티켓 등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출국 6개월 이전부터] (단, 내국인 구인노력 등 일련의 절차 진행 필요)
		4대보험 상실신고	통합홈페이지 (www.4insure.or.kr) [방문, FAX, 온라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1355)	
출국 후 재입국	사업주	재입국특례근로자 재입국 신청	지방관서(고용센터) (1350) [방문, 온라인]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외국인근로자 관련 **자주하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도입

작년에 베트남 여행에서 만난 사람 중 한국취업에 관심이 많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요?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방관서(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채용 및 취업은 불가합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된 사업장이나 근로자 지정알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에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던데 맞나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2.3.시행)으로 5인 미만 농어가 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단,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진행 상황을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의 입국 진행 상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사업주 서비스–도입위탁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온지 좀 되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요?

- 외국인근로자는 신규 입국시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취업교육 수료 시 사업주가 지불한 취업교육비의 약 80% 정도 환급됩니다.
- 취업교육비 환급은 취업교육기관 소재지별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교육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 **비전문취업근로자(E-9)** 체류자격: **입국일**(최초입국자의 경우)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사업장변경자**: 근로계약 개시일
  - **재고용자**: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인도 다음날

저는 농축산업 종사 사업주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점이 있나요?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기재**함으로써 추후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종기, 수확기, 거래처 요청 등으로 인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번기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농한기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최저금액과 근로자 입국 후 최저금액이 달라졌어요.
기존 임금 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 인상된 임금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사업장변경)

우리 근로자는 농업에서 일한 근로자인데, 제조업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업종 간 이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업, 어업 및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질병과 외부인자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업종간 이동을 허용합니다.

우리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어떡하죠?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3번**까지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의 합의가 되셨으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애로해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숙식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상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비용 부담금액은 당사자 간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 월 정액임금의 13%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 월 정액임금의 8%

- 사업주가 숙식을 징수할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제 사실을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주는 것이 좋으며, www.eps.go.kr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비닐하우스여도 되나요?





- 비닐하우스나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 **정해진 기준 이하의 숙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기숙사형태가**가설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패널)**인경우에는지자체신고필증, **사업장내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토록 하여 거주용도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허용합니다.
- 사업장에서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냉난방비나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 숙식비 징수 상한액은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따라서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금액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우리 사업장은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일이 없는데 일을 시킬수도 없고.. 다른 사업장에 잠깐 보낼 수 있나요?

- 농업분야 중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분야에 근로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농업분야 근무처추가 제도**라고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사업장으로 자동복귀하여야하고, 타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동안 원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 처리 됩니다.
- 같은 작물재배업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나, '축산업', '농산물 선별 · 건조 및 처리장의 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근무처 추가도 가능합니다.
- 추가 근무처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4개월 이하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문의 : 지방관서(고용센터)(1350)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공단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 우선 **경찰서**와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유선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방관서(고용센터)에는 **고용변동신고(사망)**를 하셔야 합니다.
- 장례관련 모든 처리의 시작은 사망한 근로자 국가 대사관입니다.
- **자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장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지방관서(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우리 농장은 농번기, 농한기, 계절, 기상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 기상요인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같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1회)
-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 (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자라도 가능)한 경우에는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구.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출국 후 **특별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던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이를 **"재고용"**이라고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전까지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 지방관서(고용센터)(1350)

우리 근로자는 4년 10개월동안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 (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자라도 가능)한 경우에는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구.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 지방관서(고용센터)(1350)

우리 근로자는 4년 10개월동안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사업장변경을 한 근로자인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 귀국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신청을 하면,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 그 사업장에 문자메세지와 전화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합니다.
- 이를 **'재입국자 지정알선'**이라고 합니다.
-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춘 후, 해당 근로자를 지정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내를 받은 후 25일 내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 지방관서(고용센터)(1350)

한국산업인력공단*벤꾸리툰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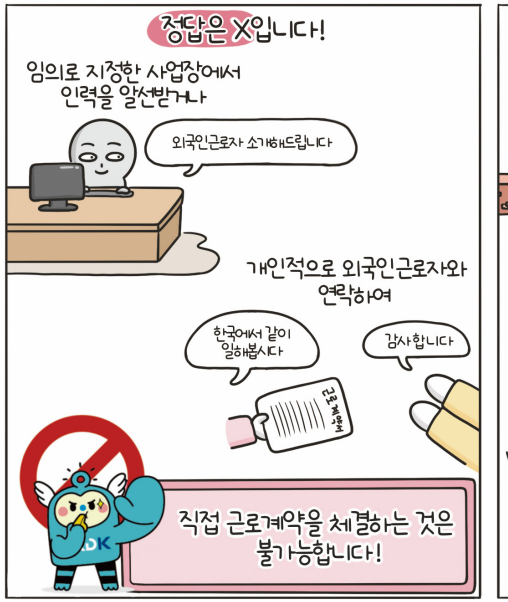



정답은 X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의 가설건축물



사업장 안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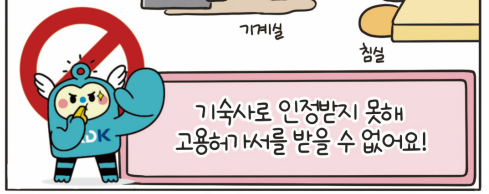

기숙사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없어요!

정식 기숙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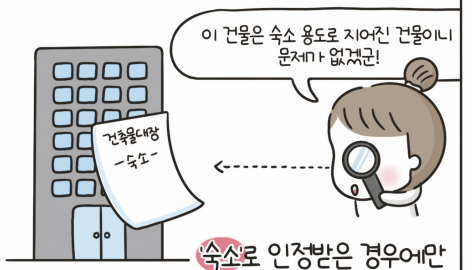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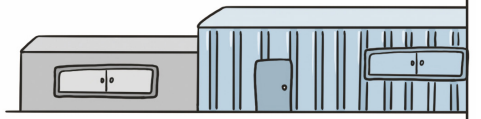

가설 건축물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숙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4년 10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반씨



이제야 서로에게 익숙해졌는데..!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아쉽다면



계약기간의 연장... 해도 되는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고



근로자와 함께 출국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21.1.1.부터 농 · 축산 · 어업, '21.7.1.부터 그 외 업종에 적용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숙소로 제공이 안돼요!

-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가 불허됩니다.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특례고용가능 확인신청,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 적용
- 단, 지자체에서 임시숙소로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사업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되어야 제공할 수 있어요!

-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주세요!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항목	세부내용
침실	성별 및 근무조 구분하여 배정, 개인당 2.5㎡ 이상 면적 제공, 1실 거주인원 8명 이하, 수납시설 설치
냉 · 난방시설	적절한 냉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 · 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 · 샤워실별 잠금장치
채광 및 환기시설	개폐형 창문 보유, 폐쇄형 창문인 경우 환풍기 설치
소방시설	방별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와 소화기 모두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사업장에서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상생과 안전을 위해 원칙을 지켜주세요!